

	<h1>보도자료</h1>	2022. 2. 9. (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67 -
“간호사 군 대체복무로 의료공백 해소”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공약 발표

-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메우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질 향상 기대, 당사자 업무역량 및 전문성 향상 효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6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간호사에게도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통한 군 복무 대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소지자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통해 병역 대체가 가능하다. 공중보건간호사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며, 공공의료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는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통해 병역을 대체할 수 없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각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상당수가 간호사 부족 문제로 몸살을 앓는 현실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 후보는 이 점을 언급하며 공중보건간호사와 같이 간호사들의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간호사 개인 선택에 따라 일정 기간의 공중보건업무 종사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통해 보건소나 지방의료원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추가 인력 규모인 4,200여 명 수준의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각 지역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격차 해소 효과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중보건간호사로 근무하는 남성 간호대 학생에게는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관련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간호사 직종의 여성 비율 우세 경향이 꼽혀왔다. 간호사 면허소지자의 다수가 여성으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고, 도입 실효성도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021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 중 남학생 수는 25,000명을 넘는다. 늘어난 숫자만큼 관련 제도 도입 기반도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관련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며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786-2741

□ 설명자료

1) 공공의료시설 간호인력 부족 현황

- 보건소 간호사 1,715명
- 지방의료원 및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2,200명
- 교정시설 간호사 300명

2) 남자 간호대생 현황 및 간호사 시험 합격자 수

[표1] 간호대생 성별 학생 수 현황(2012~2021년, 단위:명)

연도	남	비율(%)	여	비율(%)	합계
2021	25,671	22.2	89,988	77.8	115,659
2020	24,357	21.6	88,290	78.4	112,647
2019	23,085	20.9	87,280	79.1	110,365
2018	21,661	20.0	86,622	80.0	108,303
2017	20,086	19.0	85,961	81.0	106,066
2016	18,353	17.8	84,799	82.2	103,170
2015	16,882	16.9	82,931	83.1	99,830
2014	14,597	15.7	78,604	84.3	93,217
2013	12,441	14.2	75,468	85.8	87,923
2012	10,290	12.9	69,336	87.1	79,63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표2] 간호사 국가 면허시험 성별 합격자 수(2015~2020)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여	14,372	15,768	17,334	17,581	17,781	18,396
남	1,363	1,732	2,133	2,342	2,841	3,178

* 2021년 남/여 국가고시 합격현황 통계자료 없음 (2021년 자료는 2022년 6월 공개 예정)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1)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에 대한 현장 의견 조사

조사기간: 2021.3.2~3.11, 조사대상 : 남자간호대생 3,691명, 남자간호사 1,034명

○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찬반**

- 남자간호대생 : 군필자 찬성 81.0%, 미필자 찬성 85.1%
- 남자간호사 : 군필자 찬성 74.3%, 미필자 80.4%

○ **제도 도입 찬성률**

(공중보건간호사제도 관련 융합연구, 이영신, 2016년, 디지털복합연구 제14권 3호)

- 의료제공자(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 77.3%
- 의료이용자(입원환자 및 보호자) : 70.8%

4) 제도 관련 진행사항 및 법안 발의 현황

(1) 2021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보건복지위원회 2021.10.7)

- 강병원 의원 “**남간호대생 2만3000여명 공중보건간호사로 의료인력 충원해야**”
권덕철 장관 답변 :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필요성을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지역 간 의료의 격차가 존재해 병역의무뿐만 아니라 취약지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도 병역 못지않게 중요”
“국방부, 병역자원 감소 고민하고 있기에 적극적 협의, 종합적으로 검토”

(2) 관련 법 개정안 발의 현황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3908)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간호사 비롯, 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자격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 종사로 병역의무 이행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민홍철 의원, 윤주경 의원 대표 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로 병역의무 이행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Q&A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관련 Q&A

Q1.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이 꼭 필요한가요?

- ☞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공중보건의로사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교도소 등에서 중추적인 의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공중보건 의가 없다면 공공의료와 취약지 의료시스템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각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업무부담은 커지고 그만두는 간호사도 많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공중보건간호사는 의사 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공과 면허를 살려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간호학과 진학 남학생 비율이 대폭 늘었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생만 2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 의와 같은 제도가 없다 보니 대다수 남학생들은 재학 중 일반 병사나 사회복지요원 등으로 군 생활을 합니다.
-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시 남자 간호대생들은 면허를 활용해 군 복무 대체는 물론, 소득 활동, 간호사로서 역량을 키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각종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충을 가능케 해 국민의 건강권 확립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Q2. 병역미필은 모든 남자간호대생이 면허를 따면 공중보건간호사에 가야 하나요?

- ☞ 최근 각종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부족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 간호사 1,715명 지방의료원 및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2,200명, 교정시설 간호사 300명 등입니다. 일단 부족한 인원과 의료인력 수요 계획을 검토해 선발인원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중보건간호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군 복무 대체를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로 하고 싶은 간호대생들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Q3. 공중보건간호사가 도입되려면 어떤 법이 바뀌어야 하나요?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병역법」이 함께 개정되어야 합니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공

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로 편입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합니다.